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3275
----------	------

2025년 12월 1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20일, 김용호 의원(찬성자 : 22명)
-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전반에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건설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지원과 함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지역건설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의2제4호).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및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9조의2(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지역건설산업종사자 중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u>

-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 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¹⁾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대부분 3년 이내 비정규직으로 근무²⁾ 중에 있는 것으로 파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202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자료’ 73번 공사현장 외국인 근로자
- 본부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국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원 남성이고, 대부분 3년 이내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악되며,

- 최근 3년간('22년~'24년) 현황을 살펴보면 '22년 344명, '23년 511명, '24년 90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같은 기간 안전사고 또한 '22년 1건, '23년 3건, '24년 5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참조).

[표] 최근 3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행 외국인 근로자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외국인 근로자	344명	511명	908명
외국인 안전사고	1건	3건	5건

- 이에,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안전사고 요인을 살펴보면 언어 소통의 한계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³⁾되고 있으며, 건설업 특성상 현장 인력의 상당수가 전문적인 한국어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일용 형태의 비정규 외국인으로,
- 한국어로 된 작업지시와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어 내국인에 비해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16개국 언어로 제작된 안전교재, 포스터, 경고표지, 동영상 등을 건설현장에 보급⁴⁾하고 있으나, 주로 자료 제공 수준에 머물고 있어

3) '외국인근로자의 산재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2023.1.)
○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언어소통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현실임.

-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유해위험 요인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낮선 환경과 언어소통 장애등으로 재해예방 지식·정보의 습득에 한계가 있어 산재 발생 위험성이 큰 실정임.

4)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수칙 한눈에 쭉!' 안전보건공단 (2024.6.23.)

개별 건설현장에서 이를 실제 작업에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역 및 교육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는 이를 보완코자 '24년 10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실시간 통역시스템을 공공 건설현장에 도입하여 '25년 10월 기준 19개 건설공사장에서 운영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연 2회 '찾아가는 안전교육'⁶⁾을 실시하는 등 언어소통의 한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동 정책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건설근로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의적 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동 개정안은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을 도모하려는 취지임에도 개정안의 적용 대상 업종인 '지역건설산업'이 현행 조례 제2조제1호⁷⁾에서 건설산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

16개국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자료 제작·배포 … 누적 콘텐츠 “약 1,500종”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용접작업 화재, 밀폐공간 질식 등 재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인력 16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배포했다.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영어)

5)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다국어통역시스템 운영 건설공사장 현황'

- 6개 부서 19개 현장 시범 및 확대 시행 중

6)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외국인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중

-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2시간 과정

- 건설안전·VR교육·소방안전·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

7)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유통업으로 정의되고 있어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범위가 본 개정안의 취지인 건설현장의 범위를 벗어나 다소 광범위하게 해석 될 소지가 있으므로,

- 개정안의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건설근로자'로 수정하여 대상 범위를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앤	수정의견(안)
제9조의2(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외국인근로자</u> ----- ----	제9조의2(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외국인건설근로자</u> -----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 안 제9조의2제4호에서 신설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은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지

임에도, 적용 대상 업종인 ‘지역건설산업’ 범위가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건설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포괄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건설현장을 넘어 광범위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바,

-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건설근로자’로 수정하여 지원 대상을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로 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와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75
----------	------------

제 안 일 자 : 2025년 12월 17일
제 안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9조의2제4호에서 신설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은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지임에도, 적용 대상 업종인 ‘지역건설산업’ 범위가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건설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건설현장을 넘어 광범위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바,
-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건설근로자’로 수정하여 지원 대상을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로 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와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안 제9조의2제4호의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건설근로자”로 수정함.(안 제9조2제4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2제4호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건설근로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의2(지역건설산업 종사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종사자의 안전·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지역건설산업 종사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 ----- ----- ----- ----- ----- -----. 1. ~ 3. (생략) <u><신설></u>	제9조의2(지역건설산업 종사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건설산업종사자 중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u>
		1. ~ 3. (현행과 같음) 4. ----- --외국인건설근로자-----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건설산업종사자 중 외국인건설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2(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 · 보건 및 재해예방)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종사자의 안전·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9조의2(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 · 보건 및 재해예방)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지역건설산업종사자 중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다국어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u></p>